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업무 수행에 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평택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평택검역소 국립청주공항검역지소 신설에 따라 지소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5 중 총계 “473”을 “474”로, 일반직 계 “472”를 “473”으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5”를 “56”으로,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4”를 “23”으로, 보건연구사 “89”를 “9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475”를 “476”으로, 일반직 계 “474”를 “475”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5”를 “56”으로,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4”를 “23”으로, 보건연구사 “89”를 “90”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06”을 각각 “707”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9”를 “30”으로 한다.

부 칙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검역구역(제24조제1항 관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명 칭	위 치	검 역 항	검 역 구 역	
				수 역	육 역
국 립 인 천 공 항 검역소	국 립 인 천 공 항 검 역 소 김 포 공 항지소	서 울 특 별시	김 포 국 제공항		북위 37도33분, 동 경 126도48분의 지 점(관제탑)으로부터 190도 진북방향 402미터 지점에 위 치한 김포국제공항 을 형성하는 구역 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남 북 출 입 사 무 소		북위 37도55분, 동 경 126도42분의 지 점으로부터 남북출 입사무소를 형성하 는 구역에서 그 남 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부 산 검 역 소	국 립 부 산 검 역 소 신항 지소	부 산 광 역시	부 산 신 항	북위 35도04분39.4초, 동경 128도49분56.7 초의 지점(신항1부 두 동쪽 끝)으로부 터 북위35도04분16.7 초, 동경 128도49분 56.6초의 지점(신항4 부두 동쪽 끝)과 북 위 35도04분39.0초, 동경 128도47분04.8 초의 지점(신항3부 두 서쪽 끝)으로부 터 북위 35도03분 53.3초, 동경 128도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에 서 북컨테이너부두 지역 700미터, 남컨 테 이 너 부 두 지 역 560미터, 다목적부 두지역 200미터 이 내의 육지지역

				47분37.4초의 지점 (가덕도 서쪽 끝 매 립지까지)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국립평택검역소	국립평택검역소 대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북위 36도59분, 동경 126도20분의 지점 (황금도)으로부터 북위 36도59분59초, 동경 126도26분18초의 지점(화곡리)과 북위 37도03분59초, 동경 126도24분48초(철도) 및 북위 37도, 동경 126도19분12초의 지점(가인서)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태안항	북위 36도52분48초·동경 126도11분06초의 지점(정곡두 해안선)으로부터 북위 36도54분30초·동경 126도15분24초 지점(민어도)과 북위 36도55분30초·동경 126도15분12초 및 북위 36도54분06초·동경 126도10분06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평택검역소 청주공항지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국제공항		북위 36도43분, 동경 127도30분의 지점으로부터 청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

					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포항검역소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공항지소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북위 35도53분38초, 동경 128도39분32초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동해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속초지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속초항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북위 38도12분38초, 동경 128도36분09초)에서 조도 동단을 거쳐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조도 남단에서 북위 38도11분25초5, 동경 128도36분15초5를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양양국제공항		북위38도03분, 동경 128도40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동해검역소 고성지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		북위 38도33분58초, 동경 128도23분35초에 위치한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동 해 선 철 도 남 북 출 입 사무소		북위 38도33분55초, 동경 128도23분28초에 위치한 동해선 철도 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목 포 검 역 소	국 립 목 포 검 역 소 무안 공 항 지 소	전 라 남 도 무안 군	무 안 국 제공항		북위 34도59분, 동경 126도22분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여 수 검 역 소	국 립 여 수 검 역 소 광양 지소	전 라 남 도 광양 시	광양항	북위 34도50분02초, 동경 127도46분32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55분49초, 동경 127도48분45초의 지점, 북위 34도55분49초, 동경 127도40분의 지점 및 가마봉(소라면 대포리 뒷산)산정까지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경 상 남 도 하동 군	하동항 (하동 화 력 발 전 소부두)	북위 34도56분27초, 동경 127도49분4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1천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마 산 검 역	국 립 마 산 검 역	경 상 남 도 통영	통영항	북위 34도49분47초, 동경 128도24분27초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

소	소 통영 지소	시		의 지점(당동남쪽 튀어나온 곳)으로부터 북위 34도49분43초, 동경 128도24분27초의 지점(당산리 돌단)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0분31초, 동경 128도27분01초의 지점(매일봉)과 북위 34도49분23초, 동경 128도26분37초의 지점(진송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경 상 남 도 사천 시	삼 천 포 항	북위 34도54분55초, 동경 128도05분21초의 지점(장사발 남단)으로부터 북위 34도54분21초, 동경 128도05분0.25초의 지점(추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4분28초, 동경 128도04분40초의 지점(신수도 북단 금주갑)을 연결한 선과 동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54분17.5초, 동경 128도03분56초의 지점(장구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5분32초, 동경 128도03분27초의 지점(사천시 대방동 남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4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마 산 검 역	경 상 남 도 거제	옥포항	북위 34도53분18초, 동경 128도44분06초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

	소 거 제 시 지 소			지점 말단으로부터 북위 34도53분57초, 동경 128도43분07초 의 말단지점을 연결 한 선안의 해면	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장 승 포 항	북위 34도51분37초, 동경 128도44분16초 의 지점으로부터 북 위 34도50분58초, 동 경 128도43분59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 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 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고현항	북위 34도54분39초, 동경 128도35분08초 의 지점(다갈암)으로 부터 북위 34도55분 18초, 동경 128도36 분25초의 지점을 연 결한 선안의 해면	왼쪽 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 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제 주 검 역 소	국 립 제 주 검 역 소 제주 공 항 지 소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 시	제 주 국 제공항		북위 33도30분, 동 경 126도29분에 위 치한 제주국제공항 을 형성하는 구역에 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73</u>	• <u>474</u>	+1
일반직 계	• <u>472</u>	• <u>473</u>	+1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 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 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 <u>55</u>	• <u>56</u>	+1
•	•	•	
•	•	•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 ·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 기 또는 시설서기	<u>24</u>	<u>23</u>	-1
·	·	·	
·	·	·	
보건연구사	<u>89</u>	<u>90</u>	+1
·	·	·	
·	·	·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75</u>	<u>476</u>	+1
·	·	·	
·	·	·	
일반직 계	<u>474</u>	<u>475</u>	+1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 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 관·시설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55</u>	<u>56</u>	+1
·	·	·	
·	·	·	
행정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 ·전산서기·통계서기·공업서 기 또는 시설서기	<u>24</u>	<u>23</u>	-1

•	•	•	
•	•	•	
보건연구사	<u>89</u>	<u>90</u>	+1
•	•	•	
•	•	•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706</u>	<u>707</u>	+1
일반직 계	<u>706</u>	<u>707</u>	+1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통계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 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 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29</u>	<u>30</u>	+1
•	•	•	
•	•	•	